

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 노동자 및 시민들의 권리구제와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분야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- 나.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칭 :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(1)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
- (2) 「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위탁운영)
- (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의회 동의)

다.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
* 현행위탁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(3년)

라. 위탁사무 :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전반

- (1) 노동상담 및 일반법률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
- (2)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·캠페인
- (3) 기타 노동정보 제공, 지역 노동현황 실태조사 등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(1) 위 치 : 구미시 산호대로 185(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, 1층)
- (2) 사 업 비 : 248백만원(도 30, 시 218)
- (3) 규 모 : 건축연면적 1,293㎡(지하 1층, 지상 3층)
- (4) 운영인력 : 5명(센터장 1, 실장 1, 부장 1, 차장 1, 노무사 1)

바. 추진실적

- (1) (2021년) 법률상담 : 3,016건, 노동교육 : 132명
- (2) (2022년) 법률상담 : 2,813건, 노동교육 : 1,701명
- (3) (2023년) 법률상담 : 3,691건, 노동교육 : 1,815명

사. 소요예산 : 248,000천원 ※ 2025년 추계액 기준

아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(1) 선정방법 :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- (2) 평가내용 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- (3) 평가방법 :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※ 수탁기관의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운영계획 등 심사
- (4)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자.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 ※ 2024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4. 부서의견

- 가. 증가하는 노동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인노무사,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법적 지식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,
- 나. 노동법률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상담 업무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. 법률상담 등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동자 및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실행 필요

5. 향후 추진계획

- 가. 수탁사업자 공개 모집 : 2024. 11.
- 나. 위·수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: 2024. 11.
- 다.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24. 12.

6.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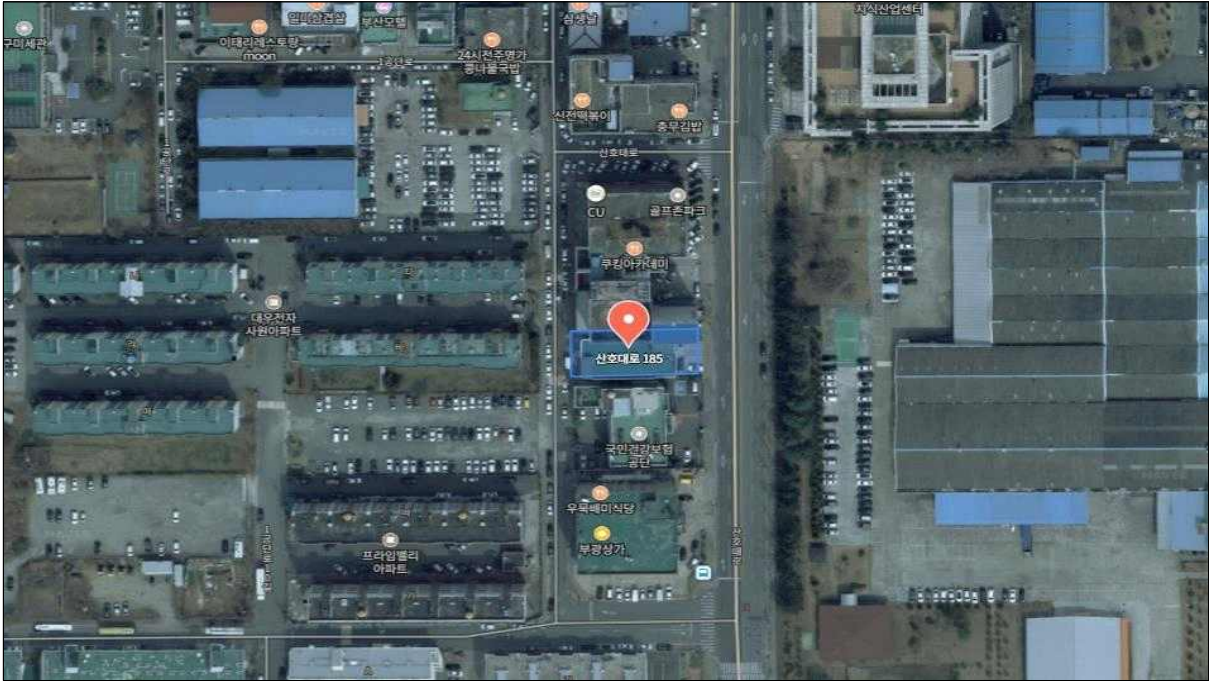
가. 관계법령

- (1)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
- (2) 「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위탁운영)
- (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의회 동의)

나. 비용추계서

사진대지

□ 위치도



□ 현장 사진



관계법령

□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-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- 제5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필요시 상담소를 관계법령 및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·심사하여 선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계법령 및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민간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·운영비·사업비 등 재정소요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5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
-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세출	○ 민간위탁금		248,000	248,000	248,000	744,000
	소계(b)		248,000	248,000	248,000	744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국비			-	-	-	-
도비			30,000	30,000	30,000	90,000
시비			218,000	218,000	218,000	654,000
민간			-	-	-	-
기타			-	-	-	-
합계			248,000	248,000	248,000	744,000

5. 부대의견 :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 : 노동복지과 노사정책팀 이인호(☎480-6204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항목	예산액	산출기초	
합계		248,000		
노동 법률 상담 사업	소계	210,068		
	인건비	182,348	• 급여(센터장)	31,680,000원
			• 급여(부장)	33,946,000원
			• 급여(노무사)	44,619,000원
			• 급여(차장)	28,790,000원
			• 업무활동비	8,400,000원
			• 연차수당	4,900,000원
			• 상여금	4,800,000원
			• 퇴직연금부담금	13,344,000원
			• 4대보험부담금	11,869,000원
	복리비	13,320	• 정액급식비	6,720,000원
			• 정액교통비	4,800,000원
			• 건강검진비	600,000원
• 복지포인트			1,200,000원	
자문료	14,400	• 변호사자문료(2명)	14,400,000원	
교육 사업	소계	6,090		
	강사비	2,010	• 교육, 컨설팅 강사비	2,010,000원
	재료비	330	• 교육간식, 문구류 등 구입	330,000원
	홍보비	3,750	• 홍보물품, 리플릿 제작	3,750,000원
운영비	소계	31,842		
	사무 관리비	27,202	• 현수막 제작, 광고비	6,400,000원
			• 홈페이지운영관리비	660,000원
			• 일반수용비	5,871,000원
			• 이동노동자지원사업	10,715,000원
			• 수선비	3,156,000원
			• 도시인쇄비, 업무서식 제작비	400,000원
	업무 추진비	1,200	• 부서업무추진비	1,200,000원
출장비	3,440	• 관내·관외출장비	3,440,000원	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유 태 란
	팀 장	이 중 호
	담 당 자	이 인 호 (480-6204)